

산업안전 Q&A

Q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 12조 5항 4에 의하면 “3가지 이상의 유해그림에 해당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별로 최대 3가지의 유해그림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유해성이 3가지가 넘는 경우 유해·위험의 우선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경고표시사항을 기재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16가지 유해물질의 유해·위험 우선 순위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로 다른 유해물질이라도 표시되는 그림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그림을 중복해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밑에 “7”로 표시하고 유해물질의 명칭을 두개를 넣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A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한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1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는 대상화학물질의 함유량이나 독성정도, 노출가능성 등에 따라서 사업장 자체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 표시되는 유해그림이 같으면 그림을 하나만 넣고 밑에 “7” 표시하여 유해물질의 명칭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당사는 강원도 화천댐에서 수중작업과 관련있는 공사(비상수문설치공사 중 일부공사)가 있어 그 해당 작업자(주로 잠수부)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없는 관계로 작업수행시 안전관리비는 수중공사분 포함 계상이 되어 있으나 사용할 근거가 없어 그 사용분만큼 불가피하게 감액이 될 사항 인지라 너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근거 및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는 수행이 되었고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법적인 제재까지 받지 않을까 안전관리자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1 개인보호구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목적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인보호구가 수중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라면 그 구입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동 기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별표3에서 정하는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공사 특성상 이를 지킬 수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의 승인을 받아 공사진척도에 관계 없이 필요한 만큼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에 대해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
- 2 보호구의 부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부품
-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위 법 제35조 3호에 해당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위 법 시행규칙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따로 규정을 둔 것이 있는지요? 비록 외국에서 검정을 받지 않고 수입한 10개의 안전모를 자기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동 안전모가 일본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귀부의 규정 유무 및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국가간에 상호인증협약등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함)

2 따라서, 일본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 합격한 보호구(안전모)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인증기관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조치를 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보호구를 일본에 있는 사업주가 수입하여 일본의 자체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전위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12조에 의거 외국 공인기관의 검정방법 및 기준 등이 동 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등 이상일 때에는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검정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